

1. 제정 이유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실증사업자·도심항공교통사업자·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행정처분 수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필수시설 등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2조)
- 나.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실증사업자 지정 신청 및 사업자 지정서 발급 등 관련 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실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7조).
- 마.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 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함(안 제9조)
- 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 또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10조)
- 아.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기준 및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자.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2조)

차.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13조)

카. 버티포트 지정 방법을 규정함(안 제14조)

타.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시기 및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파.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고,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5에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20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안 전문

2)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대상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광고용 현수막 건인 등 공중광고
2.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4.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치안 활동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조제8호에 따라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으로 인정하는 업무

제4조(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색·구조
2. 의료·응급후송
3.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는 비행훈련(「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광고용 현수막 건인 등 공중광고
5.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6.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7.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치안 활동
8.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이하 “실증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실증사업구역의 명칭·위치·범위
2. 지정의 목적
3. 지정의 연월일
4. 지정 기간
5.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6.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7. 그 밖에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실증목적 및 실증기간

나. 실증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다.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증사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실증사업자의 처분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이하 “시범운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의 명칭·위치·범위

2. 지정의 목적

3. 지정의 연월일

4. 지정 기간

5.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6.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7. 그 밖에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변경·해제 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해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 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버티포트 개발계획서

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개발목적

나.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 현황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버티포트 개발공

사 예정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3.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개략적인 공사비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4.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2. 허가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버티포트 시설의 개요 및 개발 목적

4. 버티포트 개발 기간 및 공사 방법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허가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11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인가 등) ① 법 제9조제6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2. 도심형항공기의 지상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② 법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 현황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2. 법 제9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의 전후 비교

④ 법 제9조제8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누적된 비용 또는 기간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4. 설비의 위치 변경

⑤ 법 제9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버티포트의 준공 등)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버티포트개발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3.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4.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에 대한 버티포트 준공확인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제13조(버티포트개발사업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버티

포트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범운용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도심형항공기 항행을 위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
2. 지상 및 공중 장애물 회피가 가능할 것
3. 타 도심항공교통회랑과의 상충이 일어나지 않을 것

제16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 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영위하려는 분야의 안전한 운용 및 다른 사업 분야와 안정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사업계획서(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법 제7조에 따라 실증사업자로 지정되어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성과 및 적용 계획

②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처분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대상지
2.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규제신속확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버티포트 구성 시설(제2조 관련)

가. 필수시설

- 1) 풍향지시기
- 2) 버티포트 식별표지

나. 필수 지원시설

- 1) 이착륙지원안전시설(통신시설, 감시시설, 항공등화 등)
- 2) 소방시설
- 3) 기상관측시설

다. 부가시설

- 1)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 2) 버티포트 접근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 3) 버티포트와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통신·냉난방 시설
- 4)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 5) 버티포트와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6) 고장 도심형항공기 처리·관리를 위한 시설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법 제7조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제4항제2호	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일부 정지 (60일)	사업 일부 정지 (90일)	지정 취소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자가 실증사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제3호	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일부 정지 (60일)	사업 일부 정지 (120일)	지정 취소

버티포트개발사업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제9조 관련)

구분	기준
재무능력	1) 법인: 납입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17억원 이상
기술능력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비고

- 발주를 통해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행정처분 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공사중지인 경우에는 그 공사중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법 제10조제2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90일 이상의 공사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공사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1호	허가 취소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개발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	원상 회복			
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	공사 중지 (30일)	공사 중지 (60일)	공사 중지 (90일)	허가 취소
라. 사정 변경으로 버티포트 개발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3호	허가 취소			
마. 법 제10조제1항각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4호	공사 중지 (30일)	공사 중지 (60일)	공사 중지 (90일)	허가 취소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5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제5항제2호	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일부 정지 (60일)	사업 일부 정지 (90일)	지정 취소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가 시범운용구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법 제14조제5항제3호	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일부 정지 (60일)	사업 일부 정지 (120일)	지정 취소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실증사업 참여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인력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주요 장비	명칭	규격	수량	실증능력(용량)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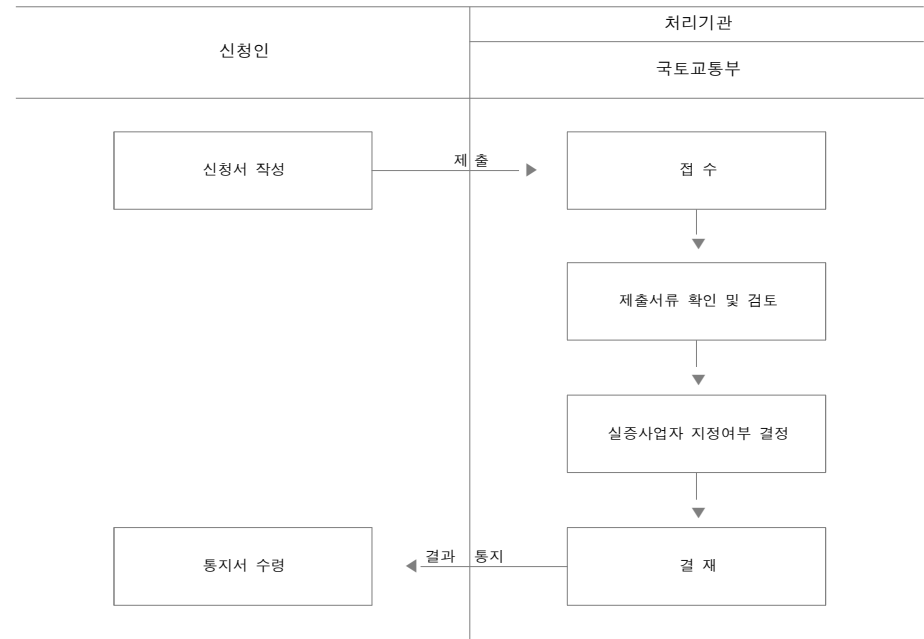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증 목적 및 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대장

지정번호	지정일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종료 예정일	지정공문 번호	사업내용

제 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

1. 상호(법인명):
2. 성명(대표자):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4. 소재지:
5. 사업분야:
6. 영업소:
7. (최초)지정연월일:
8. 지정기간*: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실증사업구역 운영 계획에 따라 지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부대조건:

「도심항공교통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 지정
시범운용구역 [] 지정변경 신청서
[] 지정해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시범운용구역 명칭
	시범운용구역 위치
	시범운용구역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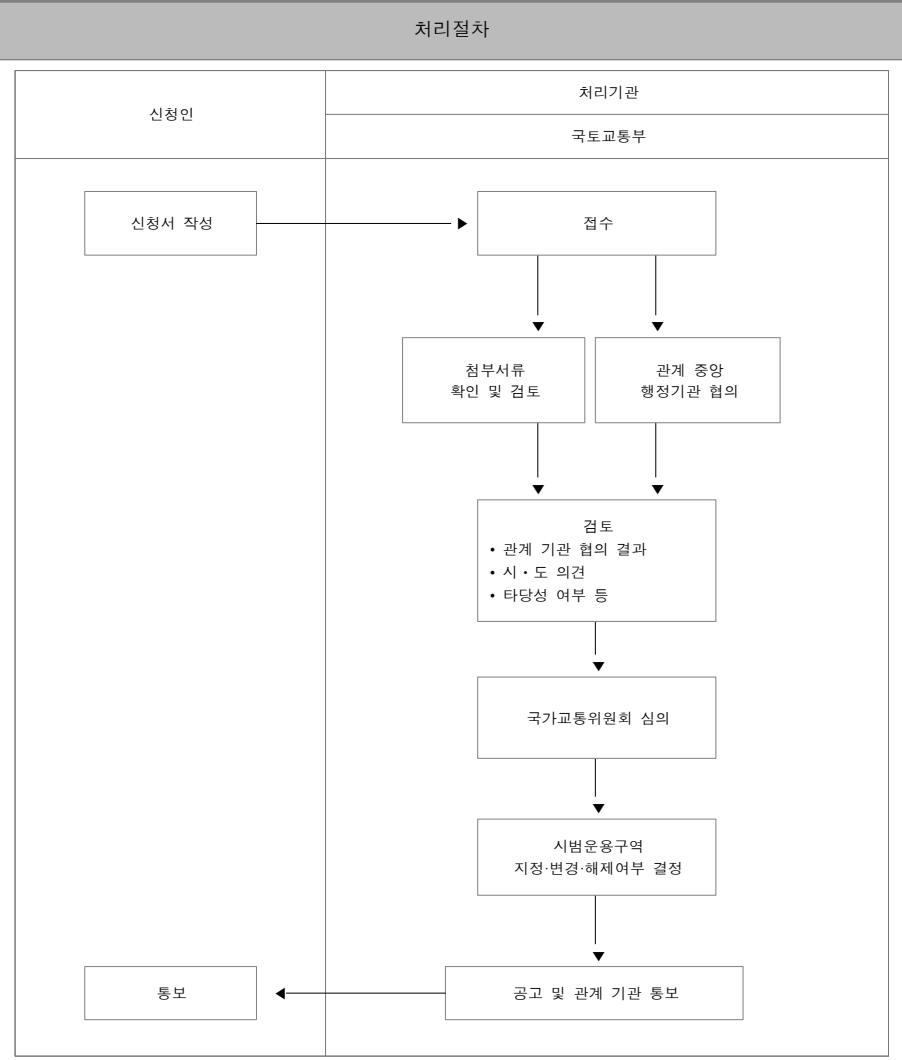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말하며,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또는 변경·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시범운용구역 지정·변경·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버티포트

[] 개발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 칭					
위 치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버티포트 개발계획서 2. 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버티포트 개발공사 예정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합니다) 3. 소유자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개략적인 공사비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합니다) 5.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지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인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보 고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사(사업)의 명 칭			허가일		
위 치					
시설규모 또는 면적					
총공사비			공사기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보고인 제출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3. 시공품질검사내역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9 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합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지 수령
보고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보고인

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	------	-------------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사업)의 명칭	실시계획 승인일
---------------	-------------

시설규모 또는 면적	
------------	--

사용허가 신청내용	
--------------	--

임시사용 기 간		공사완료 예 정 일	
-------------	--	---------------	--

총공사비		공사기간	
------	--	------	--

이
예
제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신청인 제출서류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9 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자본금			
	사업 범위			
	[] 여객운송 [] 화물운송 [] 교통관리 [] 버티포트 [] 사용사업			
	사업예정구역			
	사업개시목표일			
	임원의 명단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

[] 버티포트운영·관리사업

[]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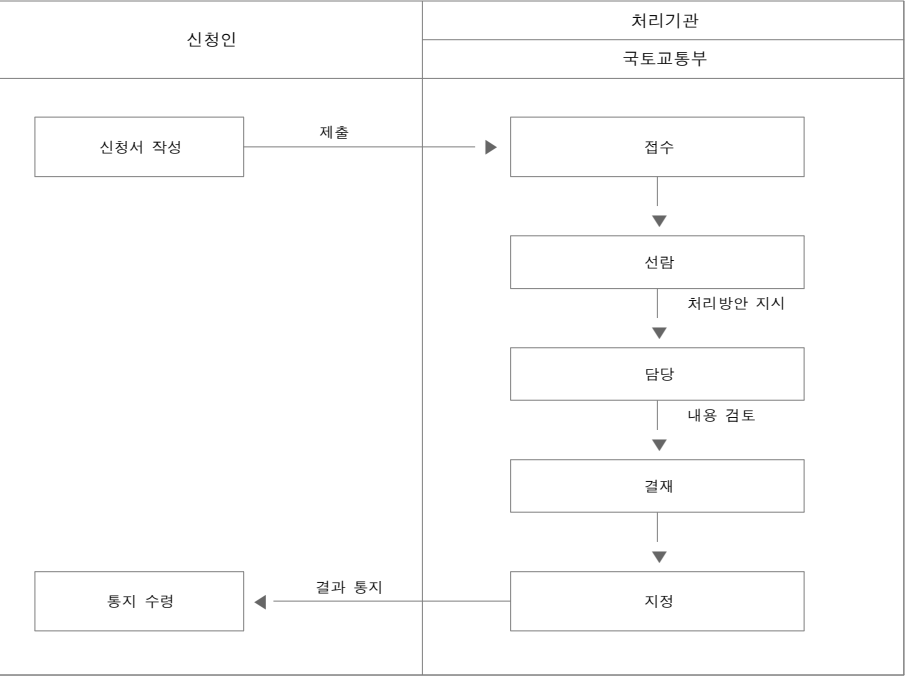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3.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종사자 또는 정비업자, 관련 도심항공교통사업자(실증사업자 및 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준비 중인 자 포함), 도심형항공기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증사업자로 지정되어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성과 및 적용 계획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지정을 받으신 후 실제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시범운영구역 지정 (법 제8조) 나. 시범운영구역에서의 규제특례사항 (법 제16조)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전화번호 044-201-42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

지정번호	지정일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개시 예정일	지정공문 번호	사업자 구분	사업내용

제 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

1. 상호(법인명):
2. 성명(대표자):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4. 주소(소재지):
5. 사업분야:
6. 영업소:
7. (최초)지정연월일:
8. 지정기간:
-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시범운용구역 운영 계획에 따라 지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부대조건:

「도심항공교통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해당 시범운용구역	명칭		
사업계획	주요내용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규제법령 (아는 경우 기재)	소관 행정기관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규제 법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과 관련된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이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기 위해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해당 법조문	처리 절차	서식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규제 신속확인 신청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가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국도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항	국도교통부 소관인 경우에는 직접 검토 국도교통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항	규제 확인 신청자와 국도교통부장관에게 회신	
	국도교통부장관이 신청자에게 회신	별지 제13호 서식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해당 시범운용구역	명칭	
규제 신속확인 결과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 밖의 안내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단체 요건	[]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의 명칭:
2. 기관·단체의 대표자:
3. 소재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장

지정번호	지정일	기관명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교육시설 현황	교육장비 현황	전문 교수요원 현황

(앞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검사공무원증 (Inspector's Certificate)
사 진 3.5cm × 4.5cm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증서 번호(Certi. No.):
	구 분(Occupation):
	성 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소 속(Employed by):
유효기간(Date of Expiry):	년(y) 월(m) 일(d)
사명(Signature of Hldr.):	년(y) 월(m) 일(d)까지

(뒤쪽)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사람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a public official who has an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27 of the Special Act for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the Utilization of Urban Air Mobility, to order UAM Service Provider to file any report or submit any materials deemed necessary for relevant affairs. This person is also duly authorized to access offices of UAM Service Provider or any such places as may be necessary to perform inspections on the Services.

발행번호 (Issued No.):
 발행 일자 (Issued date):
 발행장소 (Issued at):

국토교통부장관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